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19

발의연월일: 2022. 7. 6.

발 의 자:윤재갑·고민정·문진석

서동용 · 서삼석 · 소병철

신정훈 · 위성곤 · 이개호

주철현·홍문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수의사법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

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,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, 알선,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 운 문제가 있음

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, 「민법」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37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및 위원 등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	의제)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
	위탁받은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
	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
	된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및
	위원 등은 「형법」 제129조
	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
	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
	<u>다.</u>